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비용 부담 등〉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61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비용 부담(안 제48조의4제9항 신설)	2
2.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 제48조의7 신설)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2.

다.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비용 부담 (안 제48조의4제9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안 제48조의4 제9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u>

현행	개정안
	<u>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u> <u>이 경우 비용 부담의 산정 방법,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과 자문을 맡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 침해사고와 더불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롯데카드 침해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

성·운영이 빈번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는 경우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그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214896)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운영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및 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경우, 그 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하지 않고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사고조사는 국가의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권력작용 주체인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자칫 조사권자와의 이해 상충 우려도 낳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결과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이용자에게 대한 피해로 원칙적으로는 민사 분쟁 사항에 해당하나 피해 확산 방지,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민·관합동 조사단의 구성·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임.
- 따라서, 침해사고의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도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조사기관이 피조사자로 하여금 조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입법례는 없음.
- **둘째**, 민·관합동조사단의 비용을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면 사업자는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될수록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가 비용 부담 여부나 규모의 적정성을 이유로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조사단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조사 수단을 활용하거나 조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침해사고 조사 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비용을 부담하

게 하는 경우, 조사주체의 독립성, 조사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업자의 조사비용 부담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확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 제48조의7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안 제48조의7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48조의7 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8조의7(침해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

현행	개정안
	<u>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1. <u>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u> 2. <u>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u> 3. <u>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u> 4. <u>침해사고에 관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의 액수</u> 5. <u>침해사고의 기간·횟수 등</u> 6.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u> 7.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후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u>

다. 검토사항

- 이동통신사와 같이 다수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이용자의 수는 많은데, 일반 이용자가 그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입증책임의 전환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이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중 가해자의 고의·과실은 성립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전문분야에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가해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¹⁾.
-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침해사고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여 일반인이

1)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분석하기 어려운지,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일반인 피해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분쟁을 수행하기 곤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통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이용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기업 내부 정부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할 때 입증책임의 전환 도입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의 기술 복잡성, 피해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으로 평가되는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넓은 범위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일부 입법례²⁾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법으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 및 「형법」상 형사처벌과 중첩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

2) 주요 입법례로는 공정거래 분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분야(「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노동 분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권 분야(「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또는 그와 관련된 규정 위반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형사처벌과 중첩될 우려는 없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국민 피해 및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침해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